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업무운영규정

제 정 2003.11.21

개 정 2011.10.21(8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관한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7>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인증대상설비”라 함은 인증대상품목을 말한다.
- ② “일반심사 세부기준”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인증품목 공장확인기준을 말한다.
- ③ “설비심사 세부기준”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인증품목 기술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인증신청 등) ①센터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6.7>

②소장은 인증신청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2회에 한하여 각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서류보완의 요구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6.6.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서류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류를 신청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④소장은 복수의 성능검사기관이 공동으로 시험하거나 고시 제7조2항에 따른 부품(블레이드, 증속기, 발전기, 타워 등) 공장확인을 실시해야 하는 품목의 경우 성능검사 이전에 인증신청을 받아 제반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8.2.11>

⑤동일설비를 복수의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모델명을 달리하여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8.2.11>

⑥소장은 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성능검사기관, 관련기관 등의 전문가의 자문 또는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6.6.7>

제5조(인증심사기준) 신·재생에너지 인증품목 일반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인증품목 설비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성능검사시료) 신·재생에너지 품목별 성능검사 시료의 수, 합격판정개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공장확인) ①소장은 고시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공장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종합점수가 75점이상인 경우 합격, 60점이상 75점미만 보완, 60점미만은 불합격처리하며, 보완의 경우 3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종합점수가 75점이상 이더라도 심사항목별 점수가 해당항목의 60%이하는 불합격처리하며, 일반심사 서류의 허위작성, 국제기준 미달 등 중대한 부적합사항을 발견 시는 불합격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08.2.11, 2009.12.31>

②공장확인 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국내공장과 수입품을 제조하는 해외공장에 적용하며, 소장은 ①항에 따른 공장심사 결과 합격 처리한 경우, 설비의 시료를 채취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성능검사기관에 시험의뢰토록 한다.<개정 2009.12.31>

③공장확인에 필요한 인원은 국내공장 1인, 해외공장 1인 2일로 한다.<개정 2007.12.23, 2009.12.31>

④공장확인 은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한 인증대상품목별 인증을 처음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재지의 이전 등에 따라 공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재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신청인은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3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처음 인증신청시 제출한 서류중 변경된 부분만을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서의 교부 등) ①소장은 고시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성능검사 결과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문인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6.6.7, 2009.12.31>

②고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소요기간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의 보완기간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제1항의 인증서 교부를 위한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31>

③소장은 인증심사결과 인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6.7>

④소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증신청접수처리부에 인증서 발급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6.7>

제9조(인증내용의 변경신고) ①인증을 득한 업체(이하 “인증업체”라 한다)는 인증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개정 2006.6.7>

②소장은 인증업체로부터 인증내용의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인증서를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6.7>

③인증내용 변경사항이 모델명 변경일 경우 당초 모델명의 신·재생에너지설비와 동등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인증업체로 하여금 첨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6.7>

④인증업체가 분실 등의 이유로 인증서를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중소기업에 대한 성능검사비용 지원) ①소장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비용 지원금은 업체당 연간 2회의 범위내에서 매년도 예산액을 감안하여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등을 정한다.<개정 2006.6.7, 2009.12.31>

②성능검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성능검사비용지원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11, 2009.12.31>

③ 삭 제 <2008.2.11>

④ 삭 제 <2008.2.11>

제11조(수수료) ①소장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하는 자에게 신청건별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6.7>

②수수료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설비인증수수료 및 성능검사수수료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별표4]와 같이 정한다.<개정 2006.6.7>

③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소재지의 이전에 따른 공장확인과 제7조제5항에서 규정한 재심사 등에 따른 공장확인을 실시할 경우에도 [별표4]를 적용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6.7, 2009.12.31>

제12조(사후관리) ①소장은 고시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한 제품검사를 위하여 제조공장 또는 판매점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시료는 인증업체에서 무상임대료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6.7, 200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한 제품이 사후관리 과정에서 손괴될 경우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제품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한다.

③소장은 시료의 구입 또는 임대, 성능검사비 등 사후관리와 관련한 제반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06.6.7>

④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당해 설비는 6월 이내에 다시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09.12.31>

⑤고시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실시할 경우, 시료의 수량, 합격판정 개수는 [별표 3]과 같아야 하며, 성능검사항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성능검사항목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제13조(유사모델) ①소장은 인증대상품목 특성에 따라 유사 모델들을 군으로 분류해서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②군별 대표 모델에 대해 인증을 취득한 자는 같은 군에 속한 유사 모델의 경우 [별표 2]의 설비심사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성능검사항목만 실시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9.12.31>

③군의 특정 모델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한 경우 같은 군의 유사모델까지 인증이 취소된다.

[본조신설 2006.6.7]

제13조의2(시리즈모델) ①소장은 인증대상품목 특성에 따라 일정 범위내의 시리즈모델에 대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②인증신청자는 대표 모델에 대해 [별표 2]의 설비심사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성능검사항목만 실시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③시리즈모델 내의 특정 모델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전체 시리즈모델에 대한 인증이 취소된다.

④시리즈모델 인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계 업계 등과 협의하여 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2.24]

제14조(표시) ①인증업체는 규칙 [별표 3]의 설비인증표지를 제품 및 포장박스에 표시하여야 하며 팜플렛, 광고매체,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 등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0.1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품 전면, 뒷면 또는 명판 등 제품 외관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7]

제15조(이의신청) ①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 표시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1항에 의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인증설비의 제조·수입업체, 대리점(인), 판매 및 설치장소 등
3. 신청사유

④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7]

제16조(보고 등) ①소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현황을 익년 2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6.7>

②인증업체는 인증받은 설비의 전년도 판매실적 및 금년도 생산계획[별지 제8호서식]을 매년 1월말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6.7>

③소장은 인증서 발급 및 취소 등의 현황을 공단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할 수 있다.<개정 2006.6.7>

제17조(자문위원회) ①소장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6.7>

②위원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전문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개정 2006.6.7>

③위원장은 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장이 된다.<개정 2006.6.7>

④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증설비 취소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이 요청한 사항

<개정 2006.6.7>

⑥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6.7>

제18조(수당지급 등) 인증 관련 자문회의, 공청회, 설명회 등에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03.11.19>

이 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업무운영규정

부 칙<2005.5.23>

이 규정은 2005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6.7>

이 규정은 200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7.10>

이 규정은 2007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23>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11>

이 규정은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4>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공장확인 기준

<개정 2007.7.10, 2009.12.31>

- (1)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자재 관리의 적정성
 - 가. 외주업체의 등록관리 및 평가
 - 나. 원자재·부품 검사의 문서화 및 시행 여부
 - 다. 원자재·부품 부적합 처리

- (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품질유지관리능력의 적정성
 - 가. 품질관리의 문서화 및 조직 구성
 -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검사 기록 유지
 -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불량품 처리 여부
 - 라. 품질관리 담당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여부

- (3) 신·재생에너지설비 제품개발 및 제조능력의 적정성
 - 가. 당해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최근 3년간 기술개발 및 제품 개량화 실적
 - 나. 기술개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장비의 보유 및 관리 여부
 - 라. 신·재생에너지설비 계측장비의 보유 및 관리 여부
 - 마.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장비의 가동 여부

- (4)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후관리 적정성
 - 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취급 관리
 - 나. 제품사용설명서 및 시공지침서 적정성 여부
 - 다.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 운영
 - 라. 소비자 불만의 기록 및 처리

[별표 2]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품목별 기술기준

<개정 2006.6.7, 2007.7.10, 2008.2.11, 2009.12.31, 2010.12.24, 2011.10.21>

분야	인증품목	기술기준명
1. 태양열	1. 평판형 태양열집열기	1. 태양열집열기 기술기준 (평판형, 고정집광형, 진공관형)
	2. 고정집광형 태양열집열기	
	3. 진공관형 태양열집열기	
	4.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	2. 태양열온수기 기술기준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진공관 일체형)
	5. 강제순환식 태양열온수기	
	6. 진공관 일체형 태양열온수기	
2. 태양광	7.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 (정격출력 10kW이하)	3.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기술기준 (10kW이하) (계통연계형, 독립형)
	8. 태양광발전용 독립형 인버터 (정격출력 10kW이하)	
	9.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 (정격출력 10kW초과 250kW이하)	4.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기술기준 (10kW초과 250kW이하) (계통연계형, 독립형)
	10. 태양광발전용 독립형 인버터 (정격출력 10kW초과 250kW이하)	
	11.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5.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기술기준
	12. 박막 태양전지 모듈	6. 박막 태양전지 모듈 기술기준
	13. 태양전지 셀	7. 태양전지 셀 기술기준
	14. 태양광 집광채광기	8. 태양광 집광채광기 기술기준
	15.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9.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기술기준
	16. 태양광발전모듈(안전)	10. 태양광발전모듈(안전) 기술기준
3. 풍력	17. 소형풍력발전시스템	11. 소형풍력발전시스템 기술기준
	18. 소형풍력발전용 인버터	12. 소형풍력발전용 인버터 기술기준
	19. 중대형풍력발전시스템	13. 중대형풍력발전시스템 기술기준
4. 지열	20. 물-물 지열 열펌프 유니트	14. 물-물 지열 열펌프 유니트 기술기준
	21. 물-물 지열 열펌프 유니트	15. 물-공기 지열 열펌프 유니트 기술기준
	22. 물-공기 지열 멀티형 열펌프 유니트	16. 물-공기 지열 멀티형 열펌프 유니트 기술기준
5. 연료전지	23.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	17.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 기술기준
6. 바이오	24. 목재펠릿 온수보일러	18. 목재펠릿 온수보일러 기술기준
7. 기타	25. 축전지	19. 축전지 기술기준
	26. 모니터링설비	20. 모니터링설비 기술기준
	27. 충전제어시스템	21. 충전제어시스템 기술기준

[기술기준] 별 책(신재생에너지설비 심사세부기준)

[별표 3]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품목별 성능검사 시료의 수

<개정 2006.6.7, 2007.7.10, 2008.2.11, 2009.12.31, 2010.12.24, 2011.10.21>

분 야	인증품목	시료의 수
1. 태양열	1. 평판형 태양열집열기	1식
	2. 고정집광형 태양열집열기	1식
	3. 진공관형 태양열집열기	1식
	4.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	1식
	5. 강제순환식 태양열온수기	1식
	6. 진공관 일체형 태양열온수기	1식
2. 태양광	7.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 (정격출력 10kW이하)	1식
	8. 태양광발전용 독립형 인버터 (정격출력 10kW이하)	1식
	9.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 (정격출력 10kW초과 250kW이하)	1식
	10. 태양광발전용 독립형 인버터 (정격출력 10kW초과 250kW이하)	1식
	11.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1식
	12. 박막 태양전지 모듈	1식
	13. 태양전지 셀	1식
	14. 태양광 집광채광기	1식
	15.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1식
	16. 태양광발전모듈(안전)	1식
3. 풍 력	17. 소형풍력발전시스템(용량30kW미만)	1식
	18. 소형풍력발전용 인버터(정격출력 10kW이하)	1식
	19. 중대형풍력발전시스템(용량 30kW 이상)	1식
4. 지 열	20. 물-물 지열 열펌프 유니트(280kW 이하)	1식
	21. 물-물 지열 열펌프 유니트(105kW 이하)	1식
	22. 물-공기 지열 멀티형 열펌프 유니트 (105kW 이하)	1식
5. 연료전지	23.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5kW 이하)	1식
6. 바이오	24.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 이하)	1식
7. 기 타	25. 축전지(4,000A이하)	1식
	26. 모니터링설비	1식
	27. 충전제어시스템	1식

- 주) 1. 1식의 구성 및 개수는 품목별 기술기준에 따른다.
 2. 1식을 구성하는 성능검사이시료 중 불합격 개수가 없어야 한다.
 3. 품목에 따라 시료 및 부품을 추가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업무운영규정

[별표 4]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수수료

<신설 2006.6.7, 개정 2007.11.23>

가.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을 적용하며, 고급기술자 1인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출장비 : 현지확인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다. 제경비 : 인건비의 50퍼센트로 한다.

라. 기술료 : 인건비의 20퍼센트로 한다.

- 주)1.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비는 ‘서울-대전’ 1박2일을 기준으로 산출
2. 해외 출장의 경우 이동일수를 별도로 하고 현장확인일수 2일을 기준으로 하되, 해외출장비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해 산출한다.
3. ‘추가 신청’은 인증 취득 후 동일품목의 타모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 부가세 포함(백원 이하 절사 후 1.1배)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7.10, 2009.12.31>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신청)업체에 대한 공장확인보고서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인증(신청)업체에 대한 공장확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확 인 일				심 사 자	인
				신 청 인	인
심사결과	원자재관리	/20	/100	종합점수	판 정
	품질유지관리	/25			
	제품개발 및 제조	/30			
	사후관리	/25			
<input type="checkbox"/> 합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불합격					

1. 공장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재지	본 사			전 화			
	공 장			전 화			
자 본 금		백만원		공장규모		대지	m ²
						건물	m ²
신 청 품 목		생산능력	/년	매출실적	/년		
		생산실적	/년	수출실적	/년		
기 타 품 목		생산능력	/년	매출실적	/년		
종업원 (명)		임 원	사무직	기술직	기 타	계	관련기술 자 격 자 현 황
기 타 특 기 사 항							

2. 세부항목별 심사결과

심사항목	세 부 사 항	배 점
1)원자재 관리 (20)	가. 외주업체 등록관리 및 평가 - 외주업체 관리매뉴얼이 있으며 등록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6) - 외주업체 관리매뉴얼이 있으며 등록관리 및 평가가 미흡하다 (3) - 외주업체 관리매뉴얼이 있으나 등록관리 및 평가실적이 없다 (2) - 외주업체 관리매뉴얼이 없다 (0)	
	나. 원자재·부품 검사 실시 - 원자재·부품 검사 매뉴얼이 있으며 검사실적이 있다 (7) - 원자재·부품 검사 매뉴얼이 있으나 검사실적이 미흡하다 (5) - 원자재·부품 검사 매뉴얼이 있으나 검사실적이 없다 (2) - 원자재·부품 검사 매뉴얼이 없다 (0)	
	다. 원자재·부품 부적합 처리 - 원자재·부품 검사 부적합 관리대장이 있으며 실적이 있다 (7) - 원자재·부품 검사 부적합 관리대장이 있으나 실적이 미흡하다 (5) - 원자재·부품 검사 부적합 관리대장이 있으나 처리실적이 없다 (2) - 원자재·부품 검사 부적합 관리대장이 없다 (0)	
2)품질유지 관리 (25)	가. 품질관리 문서화 및 조직 구성 - 품질관리 매뉴얼이 있으며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7) - 품질관리 매뉴얼이 있으나 품질관리 담당자에 의존하고 있다 (4) - 품질관리 매뉴얼은 없으나 품질관리 담당자만 지정되어 있다.(2) - 품질관리 매뉴얼이 없다 (0)	
	나. 제조검사 기록 유지 - 제조검사 매뉴얼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검사한 실적이 있다 (7) - 제조검사 매뉴얼이 있으나 검사한 실적이 미흡하다 (5) - 제조검사 매뉴얼이 있으나 검사한 실적이 없다 (3) - 제조검사 매뉴얼이 없다 (0)	
	다. 불량품 처리 여부 - 불량품 처리 매뉴얼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처리한 실적이 있다 (5) - 불량품 처리 매뉴얼이 있으나 처리한 실적이 미흡하다 (3) - 불량품 처리 매뉴얼이 있으나 검사한 실적이 없다 (2) - 불량품 처리 매뉴얼이 없다 (0)	
	라. 품질관리 교육 실시 - 교육계획에 의해 전사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담당자가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6) - 교육계획에 의해 전사적으로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 직원을 대상으로 한 품질관리 교육실적이 미흡하다 (2) - 품질관리교육 실적이 없다 (0)	

심사항목	세 부 사 항	배 점
3)제품개발 및 제조 (30)	가. 제품개발 실적 - 최근 3년간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 제품개량화 실적이 있다 (2) - 최근 3년간 간접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 제품개량화 실적이 있다 (1) - 기술개발 · 제품개량화 실적이 없다 (0)	
	나. 기술개발 조직 운영 - 회사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이 구성되어 있다 (2) - 사내 연구부서 및 연구원이 구성되어 있다 (1) - 신청품목에 대한 연구활동이 없다 (0)	
	다. 제조장비 보유 - 필수 제조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4) - 제출서류에 명기된 제조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2) - 제출서류에 명기된 제조장비를 일부만 보유하고 있다 (0)	
	라. 제조장비 관리 - 운전 및 점검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케줄에 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5) - 운전 및 점검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나 점검한 실적이 미흡하다 (3) - 운전 및 점검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나 점검한 실적이 없다 (1) - 제조장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0)	
	마. 계측장비 보유 - 필수 계측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5) - 제출서류에 명기된 계측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3) - 제출서류에 명기된 계측장비를 일부 보유하고 있다 (0)	
	바. 계측장비 관리 - 운전 및 점검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케줄에 의해 주기적으로 계측장비에 대한 검교정을 실시하고 있다 (5) - 운전 및 점검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계측장비만 검교정을 실시하고 있다 (3) - 계측장비의 검교정 실적이 전혀 없다 (0)	
	사. 제조장비 가동 - 제품 생산을 위한 전공정의 장비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 (7) - 일부 제조장비만 간헐적으로 부분 가동되고 있다 (3) - 제조장비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0)	

심사항목	세 부 사 항	배 점
4) 사후관리 (25)	가. 취급관리 문서화 및 실시 - 제품 취급관리 별도 매뉴얼이 있으며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다 (6) - 제품 취급관리 별도 매뉴얼이 있으나 내용이 미흡하다 (3) - 제품 취급관리 매뉴얼은 없으나 기타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1) - 제품 취급관리 매뉴얼이 없다 (0)	
	나. 사용 및 시공관리 - 제품사용설명서 및 시공지침서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다 (6) - 제품사용설명서 및 시공지침서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하게 구성되어 있다 (3) - 제품사용설명서 및 시공지침서 중 어느 한쪽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1) - 제품사용설명서 및 시공지침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0)	
	다. 사후관리 조직구성 - 사후관리 규정에 의해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6) - 사후관리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은 없으나 전담자에 의존하여 실시하고 있다 (3) - 사후관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0)	
	라. 불만기록 처리 및 유지 - 고객의 불만사항 처리 매뉴얼에 의한 불만접수와 시정조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고 있다 (7) - 고객의 불만사항 처리 매뉴얼에 의해 불만을 접수하고 있으나 일부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5) - 고객의 불만사항 처리 매뉴얼은 있으나 접수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 - 고객의 불만사항 처리 매뉴얼이 없다 (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7.10, 2009.12.31>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신청서(재심사)				처리기간	
				14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소재지	사 무 소	☎			
	공 장	☎			
인증대상설비		분 야			
		설비명			
		모델명		용량	
불합격통보일					
보완내역					
<p>지식경제부고시 제20 -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 하</p>					
<p>구비서류</p> <p>1. 고시 제6조제1항1의 일반심사기준 관련서류 중 처음 신청할 때와 변경된 부분</p>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2.31, 2010.12.24>

인증번호 제 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①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② 사무소소재지

③ 공장소재지

④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

제품의 특징

인 증 대 상 품 목 :

모 델 명 :

적 용 기 준 :

지식경제부고시 제20 - 호의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 장 (직인)

* 이 모델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년 월 일입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7.7.10, 2009.12.31, 2010.12.24>

Certificate No. :

Certificate of New & Renewable Energy Facility

① Company Name(Business registration No.) :

② Office Address :

③ Factory Address :

④ Certified Facility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y	

Facility :

Model :

Test Standard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facility has been certified as new & renewable energy facility in accordance with MKE Announcement No. 20 -

Certified by

New & Renewable Energy Center

* Expiry date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업무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삭 제 <2009.12.31>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7.7.10, 2009.12.31>

인증 업체명 :

대표자 :

문서번호 :

수 신 :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20 . . .

참 조 :

제 목 : 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판매실적 통보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업무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우리 회사 제품의 전년도 판매실적 및 금년도 생산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인증업체 소재지:	(전 화)				
(수입)공장소재지:	(전 화)				
인 증 담 당 자 :	성명:	(전화)	(이메일)		
자본금	종업원수		공장건물연면적		
(백만원)	(명)		(㎡)		
생산능력	생산실적		판매(수입)실적		
(단위)	(단위)		(백만원)		
인증번호	모델명	단 위	(20__)판매실적		생산계획 (당해년도)
			국 내	수 출	
※ 판매실적은 매출액기준이 아닌 생산량기준으로 작성(단위명기)					